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2000	사회개발비	4,245,459	5,239,855	△994,396	
2200	보건및생활환경개선	4,245,459	5,239,855	△994,396	
2210	보건	4,245,459	5,239,855	△994,396	
2211	원미구보건소운영	4,245,459	5,239,855	△994,396	
100	경상예산	805,825	806,334	△509	
110	인건비	496,149	494,882	1,267	
	101 인건비	496,149	494,882	1,267	
		365,133	363,866	1,267	10 일시사역인부임 ◎건강보험 부담금 경정(2,014,000원)-기정(914,000원) = 1,100 ◎국민연금 부담금 경정(3,796,000원)-기정(1,836,000원) = 1,960 ◎고용보험 부담금 경정(1,097,000원)-기정(531,000원) = 566 ◎산재보험료 부담금 경정(380,000원)-기정(204,000원) = 176 ◎암조기검진사업 보조인부임 경정(9,560,000원)-기정(12,095,000원) = △2,535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4,780 - 6,047 = △1,267 (도) 2,390 - 3,024 = △634 (시) 2,390 - 3,024 = △634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120 경상적경비	309,676	311,452	△1,776	
	201 일반운영비	248,636	246,012	2,624	
		247,636	245,012	2,624	01 일반운영비 ◎부서운영기본경비 = △2,376 ●일반수용비 경정(50,000원X44명X12월X95/100)-기정(50,000원X44명X12월) = △1,320 ●급량비 경정(40,000원X44명X12월X95/100)-기정(40,000원X44명X12월) = △1,056 ◎구강보건사업 운영비 = 4,000 ◎국내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경정(2,000,000원)-기정(1,000,000원) = 1,000
	301 일반보상금	11,680	16,080	△4,400	
		10,800	15,200	△4,400	12 기타보상금 ◎공중보건 의사진료활동장려금 경정(8,000,000원)-기정(12,000,000원) = △4,000 ◎공중보건 의사방문진료출장여비 경정(800,000원)-기정(1,200,000원) = △400
	200 사업예산	3,439,634	4,433,521	△993,887	
	210 보조사업	3,105,767	4,196,830	△1,091,063	
	201 일반운영비	92,093	145,373	△53,280	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92,093	145,373	△53,280	01 일반운영비
					◎한방 건강증진사업
					경정(4,720,000원)-기정(4,500,000원) = 22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2,360 - 2,250 = 110
					(시) 2,360 - 2,250 = 110
					◎국가예방접종확대사업운영비
					경정(0)-기정(10,000,000원) = △10,0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0 - 5,000 = △5,000
					(도) 0 - 2,500 = △2,500
					(시) 0 - 2,500 = △2,500
					◎노인의치보철사업관리비 = 2,000
					(국) 1,000
					(시) 1,000
					◎임신부 산전관리비 경정(0)-기정(42,500,000원) = △42,5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0 - 17,000 = △17,000
					(도) 0 - 12,750 = △12,750
					(시) 0 - 12,750 = △12,750
					◎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홍보비 = 1,000
					(국) 500
					(도) 250
					(시) 250
					◎노인건강관리사업
					경정(6,000,000원)-기정(10,000,000원) = △4,0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도) 3,000 - 5,000 = △2,000 (시) 3,000 - 5,000 = △2,000
	202 여비	1,952	1,652	300	
		1,952	1,652	300	01 국내여비 ◎전염병관리자과정여비 = 300 (국) 300
	301 일반보상금	112,696	107,960	4,736	
		4,456	0	4,456	01 사회보장적수혜금 ◎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= 4,456 (국) 2,228 (도) 2,228
		102,240	101,960	280	12 기타보상금 ◎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경정(3,000,000원)-기정(2,720,000원) = 28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,500 - 1,360 = 140 (도) 1,500 - 1,360 = 140
	307 민간이전	2,862,486	3,905,305	△1,042,819	
		1,991,028	3,057,682	△1,066,654	01 의료및구료비 ◎보건소에방접종약품등 경정(260,560,000원)-기정(200,731,000원) = 59,829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	
					[경 정]	[기 정]	[증 감]
					(국) 130,280 -	100,365 =	29,915
					(도) 65,140 -	50,183 =	14,957
					(시) 65,140 -	50,183 =	14,957
					◎국가예방접종병의원접종비		
					경정(0)-기정(987,733,000원) =		△987,733
					[경 정]	[기 정]	[증 감]
					(국) 0 -	493,867 =	△493,867
					(도) 0 -	246,933 =	△246,933
					(시) 0 -	246,933 =	△246,933
					◎노인의치보철사업비		
					경정(56,000,000원)-기정(58,800,000원) =		△2,800
					[경 정]	[기 정]	[증 감]
					(국) 28,000 -	29,400 =	△1,400
					(시) 28,000 -	29,400 =	△1,400
					◎노인의치보철수리비		
							= 800
						(국)	400
						(시)	400
					◎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		
					경정(672,200,000원)-기정(673,200,000원) =		△1,000
					[경 정]	[기 정]	[증 감]
					(국) 336,100 -	336,600 =	△500
					(도) 168,050 -	168,300 =	△250
					(시) 168,050 -	168,300 =	△250
					◎산모.신생아 도우미 지원		
					경정(117,500,000원)-기정(187,500,000원) =		△70,000
					[경 정]	[기 정]	[증 감]
					(국) 94,000 -	150,000 =	△56,0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시) 23,500 - 37,500 = △14,000
					◎치매조기검진사업 = 4,000
					(도) 2,000
					(시) 2,000
					◎불임부부 지원사업
					경정(172,250,000원)-기정(242,000,000원) = △69,75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86,125 - 121,000 = △34,875
					(도) 43,063 - 60,500 = △17,437
					(시) 43,062 - 60,500 = △17,438
		4,900	2,900	2,000	03 사회단체보조금
					◎국가만성병(응급실손상등) 감시
					경정(4,900,000원)-기정(2,900,000원) = 2,0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4,900 - 2,900 = 2,000
		741,640	719,805	21,835	05 민간위탁금
					◎암조기 검진사업
					경정(181,640,000원)-기정(229,805,000원) = △48,165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90,820 - 114,903 = △24,083
					(도) 45,410 - 57,451 = △12,041
					(시) 45,410 - 57,451 = △12,041
					◎산모.신생아 도우미 지원 = 70,000
					(국) 56,000
					(시) 14,0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20 자체사업	333,867	236,691	97,176	
	307 민간이전	329,767	232,591	97,176	
		259,926	162,750	97,176	01 의료및구료비 ◎간염,성병등 검사실 시약(원미구) 경정(40,000,000원)-기정(20,000,000원) = 20,000 ◎간염,성병등 검사실 시약(소사구) 경정(85,000,000원)-기정(40,000,000원) = 45,000 ◎간염,성병등 검사실 시약(오정구) 경정(20,000,000원)-기정(10,000,000원) = 10,000 ◎임산부철분제 구입 112원X1,320명X150일 = 22,176
5000	지원및기타경비	322,812	0	322,812	
5200	제지출금	322,812	0	322,812	
5210	제지출금	322,812	0	322,812	
5211	제지출금	322,812	0	322,812	
400	예비비등	322,812	0	322,812	
420	기타	322,812	0	322,812	
	802 반환금기타	322,812	0	322,812	
		237,692	0	237,692	01 국고보조금반환금 ◎한방지역보건사업 = 1,841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= 24,498
					◎보건소고혈압,당뇨,고지혈증관리사업보조임 = 12
					◎보건소고혈압,당뇨,고지혈증관리사업 = 55
					◎전염병관리실무과정교육여비 = 65
					◎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= 6,472
					◎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= 5,136
					◎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= 15,360
					◎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사업 = 2
					◎불임부부지원 = 112,914
					◎노인의치보철사업 = 50
					◎암환자의료비지원 = 96
					◎암조기검진사업 = 380
					◎에이즈예방교육홍보사업 = 47
					◎성병검진및치료비 = 1
					◎에이즈환자치료비 = 18
					◎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 = 1,494
					◎주요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비 = 190
					◎국가예방접종사업 = 525
					◎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= 352
					◎재활운동처방실소모품 = 22
					◎재활치료환자재활운동상담비 = 700
					◎건강생활실천사업보조인부임 = 1,172
					◎보건생활실천사업보조인부임 = 161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건강증진교육훈련비 = 77
					◎금연클리닉운영 = 66,052
		85,120	0	85,120	02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
					◎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= 12,249
					◎전염병관리실무과정교육여비 = 65
					◎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= 4,853
					◎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= 3,852
					◎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사업 = 1
					◎불임부부지원 = 56,458
					◎암환자의료비지원 = 48
					◎암조기검진사업 = 187
					◎주요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비 = 190
					◎국가예방접종사업 = 263
					◎공공보건의료기관의료장비지원 = 1,881
					◎구강보건실운영비 = 56
					◎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운영비 = 2,349
					◎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 = 15
					◎방문보건및노인건강관리장비지원 = 3
					◎방문보건간호용품구입비 = 32
					◎방문보건자원봉사자관리 = 38
					◎민간자율방역단방역약품지원 = 901
					◎영유아수두예방접종사업 = 22
					◎B형간염고위험군예방접종사업 = 1,657

장:(5000) 지원및기타

관:(5200) 제지출금

항:(5210) 제지출금

세항:(5211) 제지출금

세세항:(420) 기타

[원미구보건소] 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부 서 합 계		4,568,271	5,239,855	-671,584	